

(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, 기획경제위원회 위원)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기획경제위원회 왕정순 의원

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,

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왕정순 의원입니다.

오늘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,
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.

현재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르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
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 그러나 2021
년 기준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0.62%에 불과하
며,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높
은 실정입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의 산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하여, 소상공인의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.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발맞추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.

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에게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,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.

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첫째,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8조제8호에 신설하였습니다.

둘째,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10조의3에 규정하였습니다.

셋째,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시 요구되는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.

이러한 조례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, 생계형 자영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서울시 소상공인들의 일터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, 보다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.

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, 서울시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선도적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심사를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